경영유의사항 공개

1. 금융회사명 : ㈜BNK금융지주

2. 제재조치일 : 2019. 11. 1.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경영유의 5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경영진 보수체계 운영 합리화

○ 2017.12.8. 업무와 관련된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주회장, 등기이사 사장, 그 외 경영진에 대하여 활동수당(48백만원~250백만원)을 신설하였으나, 유사한 성격을 가진 기존의 업무추진비를 조정하지 않아 업무추진 성격의 경비가 과다하고

높은 퇴직금 지급률(연도별로 기본연봉의 50%)을 유지하면서 활동수당을 신설함에 따라 대표이사 등에 대한 보수의 고정지급액 비중이 50%를 초과*하여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상당부분은 변동보상이어야 한다는 내규상 보수운영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 대표이사의 경우 연간 고정지급액(퇴직금 포함) 비중이 45.0%에서 52.4%로 증가

활동수당과 업무추진비를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경영진에게 지급되는 고정보상 비중이 적정한 수준을 상회하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정비하는 등 경영진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 2017.9.28. 및 2018.3.20. 조직개편을 통하여 WM총괄, 디지털총괄, 글로벌총괄, 감사총괄 등 4개 부문을 신설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조직이 기존의 6개 부문에서 10개 부문으로 확대되고, 집행임원도 준법감시인을 포함하여 4명에서 11명(자회사 겸직 제외시 3명에서 9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자회사 경영관리에 국한되는 지주회사의 법상 업무범위 및 BNK금융지주회사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조직 비대화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사 부문을 통폐합하는 등 조직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시중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총자산, 자회사 수, 직원 수 등 업무 및 규모가 BNK금융지주회사의 4배 수준이나 집행임원의 수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음

(3) 임원 성과보수 지급기준 정비

○ 임원의 성과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 등으로 정정되거나 임원의 업무상 불법행위, 감독당국의 제재조치, 사회적 물의야기 등으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평판 등이 저하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이미 지급된 성과보수를 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관련한 보수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원의 성과보수가 불합리하게 과다 지급되지 않도록 성과보수 지급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4) 사외이사 후보 관리강화 및 평가기준 정비

○ 사외이사 후보 추천시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추천을 활용하지 않고 지배구조 관련 업무 소관 지원부서(전략기획부)가 사외이사 후보군에 편입될 후보의 대부분을 추천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 시 최초 제안자를 공시하지 않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사외이사 평가시 '이사회에 의한 평가'(비중 50%)를 항목에 포함하여 대표이사 및 사장이 사외이사를 평가(비중 33.3%)하고 동 결과를 사외이사 재선임 등에 활용하고 있어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견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외이사 후보군의 추천 경로를 다양화하고 사외이사 선임 시 최초 제안자를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사외이사를 평가하지 않도록 사외이사 평가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5) 자회사 임원의 성과평가기준 점검 강화

○ 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상임감사위원 및 ㈜BNK투자증권의 상임감사 성과평가 항목에 당기순이익, ROE 등 재무성과를 포함*하고 있어 회사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상임감사위원 등의 업무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우려가 있으므로

*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경우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단기 평가항목에 ROE 및 CIR을 포함하고 장기성과평가항목에 ROA 및 ROE를 포함하고 있으며, ㈜BNK투자증권의 경우 상임감사의 단기 성과평가항목에 당기순이익, ROE 및 CIR을 포함하고 있음

자회사 상임감사위원 등에 대한 성과평가 항목에 재무성과를 포함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등 성과평가기준에 이해상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